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2021~2025)」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,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(안 제2조제2호)

(현행)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

(개정) "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

나. 다자녀가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(안 부칙 제3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나. 예산관련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
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“자녀가 3명 이상”을 “자녀가 2명 이상”으로 한다.

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17조제10호 중 “자녀를 3인”을 “자녀를 2인”으로 한다.

③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4제1항 중 “셋째”를 “만 19세 미만의 둘째”로 한다.

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“3인 이상 둔”을 “2인 이상 둔”으로 한다.

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2호 중 “자녀를 3인 이상”을 “자녀를 2인 이상”으로 한다.

⑥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“자녀를 3명 이상”을 “자녀를 2명 이상”으로 한다.

⑦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“자녀를 3인 이상”을 “자녀를 2인 이상”으로 한다.

⑧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중 “자녀를 3인 이상”을 “자녀를 2인 이상”으로 한다.

⑨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호 중 “셋째”를 “둘째”로 한다.

⑩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기호(○) 중 “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”을 “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”으로 하고, 같은 기호(○) 중 “셋째”를 “둘째”로, “3자녀”를 “2자녀”로 한다.

⑪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중 “세자녀 이상”을
“두자녀 이상”으로 한다.

⑫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제7호 중 “3명 이상인”을 “2명 이상인”으로 한다.

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별표 4 중 “3인 이상”을 “2인 이상”으로 한다.

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“자녀를 3인 이상”을 “자녀를 2인 이상”으로 한다.

⑮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“자녀를 3인 이상”을 “자녀를 2인 이상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시에 주민 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만 자녀를 <u>3명</u>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<u>2명</u> ----- -----.
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(3명→2명)에 따른 인구정책 지원 대상 확대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(안 제2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에 따른 세출증가 및 관내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정확한 재정소요액을 추산하기 어려움.

4. 작성자

- 미래전략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허수정(054-480-6347)

관계법령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25조(가족부양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·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,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미래전략담당관
입 안 자	과 장	김 태 영
	담 당	최 미 경
	담 당 자	허 수 정 (480-6347)